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265

발의연월일: 2020. 7. 22.

발 의 자:기동민·김원이·김영배

조오섭 · 정춘숙 · 박용진

황운하 · 양정숙 · 이정문

이상민 · 한준호 · 인재근

김회재 · 강훈식 · 도종환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사자 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전 공사상심사위원회가 관련 진료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근거를 규 정하고 있지 않아 심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 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문제 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진료기록 열람·등사요청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전공사상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은 기동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제22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 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6928호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5를 제54조의6으로 하고, 제5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5(자료의 요청)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사자등(전사자등이 사망한 경우 「의료법」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전사자등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6928호 군인사법	법률 제16928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u> <신 설></u>	제54조의5(자료의 요청) 중앙전공
	사상심사위원회 및 보통전공사
	상심사위원회는 전사자등의 사
	망 또는 상이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렁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사자
	등(전사자등이 사망한 경우
	「의료법」 제21조제3항제3호
	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전사자등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
	<u>다.</u>
제54조의5(회의록의 작성 및 공	제54조의6(회의록의 작성 및 공
개) (생략)	개) (현행 제54조의5와 같음)